

4) 주차장용지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P1	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88-2 번지 일원	허용용도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(자동차관련시설)중 가목(주차장)
		불허용도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60%이하
		용적률	•200%이하
		높 이	•최고 4층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•건축물의 외벽 -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•담장 -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, 1.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권장
		색 채	•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채사용 •김포시 경관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반영
		건축선	•건축한계선은 도로경계로부터 1m 이상 후퇴
		기 타	•단,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12조의2를 적용함
P2	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52-7 번지 일원	허용용도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(자동차관련시설)중 가목(주차장)
		불허용도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60%이하
		용적률	•300%이하
		높 이	•최고 5층이하
		배 치	-
		형 태	•건축물의 외벽 -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·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•담장 -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, 1.2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권장
		색 채	•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색채사용 •김포시 경관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반영
건축선	•1층부분 도로의 경계로부터 폭3m 이상 후퇴		
기 타	•단,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12조의2를 적용함 (주차전용건축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25%이하로 계획)		
P3	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53-2 일원	-	•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•유수지와 주차장 중복결정